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	관련
번 호	2626

제안년월일 : 2025년 4월 23일
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6조의3 제1항의 경우, 실태조사가 현행 법정 기술진단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, 그 대상이 ‘서울시 전역’의 ‘전체 하수관로’로 할 경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물량이 10,866km에 달하여 현실성이 떨어지기 지는 점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을 3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로 명확히 하면서 조사 주기를 시장의 권한에 맡기고,
- ‘중장기 정비계획’의 경우 「하수도법」 제5조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서로 연계되도록 ‘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한 정비계획’으로 수정하는 한편,
- 안 제6조의3 제2항의 ‘우선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’하는 사항은 정비계획에 포함될 내용인바 ‘제1항의 정비계획’으로 포괄하여 규정하고,
- 같은 측면에서, 안 제6조의3 제3항에서도 공개대상을 ‘우선 정비 대상 지역’으로 국한하기 보다는 정비계획 전체로 하도록 조정하면서,
- 안 제7조 제3항의 ‘정기적인 안전진단’은 「하수도법」 제20조와

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의한 ‘정밀진단’과 충돌되는 문제가 있고, 제4항의 ‘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’은 정비계획이 이를 대변한다 할 것인바 상위법령과 조례 체계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삭제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실태조사 대상을 3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로 명확히 하면서 조사 주기를 시장의 권한에 맡기고, ‘중장기 정비계획’의 경우 「하수도법」 제5조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서로 연계되도록 ‘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한 정비계획’으로 수정함.(안 제6조의3제1항)
- 나. ‘우선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’하는 사항은 정비계획에 포함될 내용인바 ‘제1항의 정비계획’으로 포괄하여 규정함.
(안 제6조의3제2항)
- 다. 공개대상을 ‘우선 정비 대상 지역’으로 국한하기 보다는 정비계획 전체로 하도록 조정함.(안 제6조의3제3항)
- 라.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함.(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삭제)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의3 제목 중 “노후 하수관로”를 “노후하수관로”로 한다.

안 제6조의3제1항 중 “노후하수관로로 인한 붕괴·싱크홀 등”을 “노후하수관로(설치 후 30년이 경과한 하수관로를 말한다)로 인한 지반침하 등”으로 하고, “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”은 “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실태조사를”로, “반영한 중장기 정비계획을”은 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정비계획을”로 한다.

안 제6조의3제2항 중 “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우선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,”를 “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른”로 한다.

안 제6조의3제3항 중 “중장기 계획의”를 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”로, “우선 정비 대상 지역을”을 “정비계획을”로 한다.

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	행	개 정 안	수 정 안
	<u><신 설></u>	제6조의3(노후 하수관로 관리 계획 수립) ① 시장은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붕괴·싱크홀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,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이를 반영한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우선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,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③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중장기 계획의 주요 내용과 우선 정비 대상 지역을 공개할 수 있다.	제6조의3(노후하수관로 -----) ① ----- 노후 하수관로(설치 후 30년이 경과한 하수관로를 말한다)로 인한 지반침하 등 -----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-----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-----. ② -----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른 ----- ----- ----- ----- ③ ----- -----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----- 정비계획을 -----.
제7조(하수관로 준설 등) ① · ② (생 략)	<u><신 설></u>	제7조(하수관로 준설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관리청은 제1항의 정기 점검 외에도, 노후 하수관로의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,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·보강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	제7조(하수관로 준설 등) ① · ② (개정안과 같음) <삭 제>
	<u><신 설></u>	④ 관리청은 하수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,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·시행하고, 해당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	<삭 제>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3(노후하수관로 관리계획 수립) ① 시장은 노후하수관로(설치 후 30년이 경과한 하수관로를 말한다)로 인한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이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정비계획을 공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	<u><신 설></u>	제6조의3(노후하수관로 관리계획 수립) ① 시장은 노후하수관로(설치 후 30년이 경과한 하수관로를 말한다)로 인한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이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③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정비계획을 공개할 수 있다.		